

19. 위탁업무수행 일지(총괄)

★(주)세경기업★

연도	방문 일자	업무수행자		업무수행 내 용	문제점 및 개선지도사항	사업주 조치내용			사업주 확인
		자격	성명			개선	진행	미 개선	
2024	01-08	간호사	김희은	특수검진 실시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특수건강 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 사업주는 별표 23에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 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은 소음 및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어 이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나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유해인자별 특수건강 진단 주기 및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상이하므로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하시 어 금년도에는 주기에 맞춰 특수건강진단 실시			○	중견
2024	01-08	간호사	김희은	기업건강증진 지수 평가 결과 설명	◎ 2023년도 귀 사업장의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항(평가 결과표 첨부) ⇒ 평가 결과 39.2점으로 귀 사업장의 기업건강증 진지수는 “도입” 단계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사 업장 근로 특성, 근로자 건강 특성 등 기초데이터 를 확보하고 있으나 확동이 미흡한 단계로 자세 한 사항은 첨부한 결과표의 분야별 평가 항목 내			○	중견
2024	01-08	간호사	김희은	근로자 건강증 진운동 추진 지 도	◎ 분야별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결과 * 근골격계질환예방 분야 : 80점 * 뇌심혈관질환예방 분야 : 10점 * 직무스트레스 관리 분야 : 50점 * 생활습관 개선 분야 : 16.7점 ⇒ 사업장의 건강증진 운동 우선활동 분야는 뇌 심혈관질환 예방, 생활습관개선 분야입니다. 뇌심 혈관질환 예방, 생활습관개선 분야에서 실태파악 을 위한 조사가 미흡하거나 취약하므로 2024년도 에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기초질환 유병자 조사, 기초질환 관리(의료이용, 투약순응, 합병증) 실태조사, 대사증후군 유병자 조사 등 및 흡연, 음주, 비만, 운동실천, 식이습관, 수면습관 등에 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요관 찰자 및 유소견자, 대사증후군 근로자, 뇌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 상 위험군 등 및 흡연자, 음주 자, 아침 결식자 등의 분야 별로 집중관리 해야 할 위험 근로자를 파악하여 그 근로자들을 대상 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추진바랍니다.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뇌심혈관질환 예방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 자 관리 및 교육,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비만관리 등 - 생활습관 개선 : 금연, 절주, 식생활개선, 손씻 기 등 개인위생관리, 사고예방, 신체활동 활성화 (예:계단이용, 돌레길 걷기 등) 등 ⇒ ‘자체 건강증진 개선계획 작성 가이드’를 메일 로 첨부 하오니 사업장 내 건강증진프로그램 추			○	중견

연도	방문 일자	업무수행자		업무수행 내 용	문제점 및 개선지도사항	사업주 조치내용			사업주 확인
		자격	성명			개선	진행	미 개선	
2024	01-08	간호사	김희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의 제26호 <분진작업의 종류> : 황사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보건조치> : 사업주는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단기간의 노출은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 악화, 폐기능 저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하고 장기간에 걸쳐 노출될 경우 심혈관질환, 호흡기계질환, 폐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12~3월)은 대기 정체 심화로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이들 먼지는 매우 작아 숨쉴 때 폐포 끝까지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법에서는 황사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옥외작업 근로자들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옥외작업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첨부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가이드' 참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적절한 보건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1. 대기오염 정보 수시 확인 2. 마스크 지급, 착용 및 교육 ① 옥외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2급 이상) 또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제공하여 착용토록 관리 ② 작업 전 옥외작업자에게 미세먼지 유해성 및 예방 방법 주지 ③ 마스크 지급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해 교육 3. 작업 조정 및 관리 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시 옥외장소에서의 작업 조정하거나 단축 ② 민감군(임산부, 노약자, 뇌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알레르기질환자 등)은 미리 파악 후 옥외작업을 단축시키는 등의 조치 4. 기타 건강관리 :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옥외작업 후에는 손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	장현